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94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2.6.10. 공포)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를 법률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시스템의 정보보관기한 등을 규정하여 관리부담을 완화하며, 전자입찰과 관련된 자동연기공고 기준을 명확화 및 규정 내 상충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운영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의 개정에 따라 회계감사 공개대상을 기존 300세대 이상에서 의무관리대상으로 관리규정에 반영(안 제15조 제3항)
- 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하는 입찰정보, 유지관리이력 등 정보의 보관기한을 규정 (안 제18조)
- 다. 전자입찰의 자동연기대상을 마감일시가 도래하기 전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입찰로 명확화하며 자동연기 제외 및 연장기간 차등해소 (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82, 3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